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59호

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6. 8.~ 2023. 6. 21.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임희래	1955.○.15.	채권(예금)	₩28,738,200	광주 광산구 사암로
2	기준호	1982.○.03.	채권(예금)	₩1,770,000	광주 광산구 하림길
3	최정석	1985.○.14.	채권(예금)	₩840,000	경기 평택시 산단로121번길
4	백정희	1958.○.02.	채권(예금)	₩885,000	전남 나주시 금성관길
5	김종민	1986.○.29.	채권(예금)	₩6,637,500	전북 남원시 춘향로
6	권남건	1990.○.09.	채권(예금)	₩18,972,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7	주식회사 디케이	210111-0152802	채권(예금)	₩4,087,5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1길5-7, 1층
8	신동술	1968.○.20.	채권(예금)	₩2,108,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산1길
9	윤성길	1975.○.24.	채권(예금)	₩22,830,000	제주 제주시 은수길
10	(주)크레디트컴퍼니	210111-0140740	채권(예금)	₩5,302,5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바우배기1길31-9, 4층
11	농협회사법인 하루그룹주식회사	210111-0124306	채권(예금)	₩11,685,000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1402
12	채현구	1993.○.05.	채권(예금)	₩10,303,360	서울 강남구 역삼로11길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관할팀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6, 159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